

### 아파트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여고생 세 명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각가의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공동현관 내 계단 또는 상가엘리베이터 앞으로,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을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와 피고대리인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범죄의 경우,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강제추행(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914 판결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 및 2021초기438 위헌법률심판제청)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 1, 2, 3에 대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아파트 공동현관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입구로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경우: 수용**

공소외 1, 3가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아파트의 공동 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용도, 설질과 평소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 피고인의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 모르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들어간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며,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거주자 및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였음.

**-상가 1층에 피해자를 뒤따라간 강제 추행 경우: 기각**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건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또, 피고인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 및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판단 정리 및 의의

즉,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 및 상가의 공용부분에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주거등침입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거주자의 의사뿐 아니라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및 외부자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방식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법원이야기)